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한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648

발의연월일: 2024. 10. 10.

발 의 자:김한규·추미애·진선미

이원택 • 양부남 • 박주민

신정훈 • 이연희 • 김영환

문정복 • 백혜런 • 박정현

김태년 · 장철민 · 박희승

백승아 • 전진숙 의원

(17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·청소년을 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,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·시청한 자, 아동·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또는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·청소년을 매매 또는 이송한 자, 아동·청소년 성매매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자금·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등은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"알면서"라는 문구로 인하여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고의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하고, 결국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여 피의자가 처벌을 면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. 이에 현행법에 따른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 및 성매매 범죄 관련 처벌 규정 중 "알면서"라는 문구를 모두 삭제함으로써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엄중히 단속하고 성범죄로부터 아동·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11조, 제12조 및 제15조).

법률 제 호

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1조제4항 중 "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·청소년을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"를 "아동·청소년을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"로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"구입하거나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·시청한 자"를 "구입·소지 또는 시청한 자"로 한다. 제12조제1항 중 "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·청소년"을 "대상이 되는 아동·청소년"으로 한다.

제15조제1항제3호 중 "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·토지"를 "사용되는 자금·토지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아동・청소년성착취물의	제11조(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
제작·배포 등) ① ~ ③ (생	제작·배포 등) ① ~ ③ (현행
략)	과 같음)
④ <u>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을 제</u>	④ <u>아동·청소년을 아동·청소</u>
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	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
아동・청소년을 아동・청소년	한 자
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	
<u>자</u> 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	
처한다.	
⑤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을 <u>구</u>	<u> </u>
입하거나 아동・청소년성착취	입·소지 또는 시청한 자
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	
<u>청한 자</u> 는 1년 이상의 유기징	
역에 처한다.	
⑥ · ⑦ (생 략)	⑥ · ⑦ (현행과 같음)
제12조(아동・청소년 매매행위)	제12조(아동·청소년 매매행위)
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	①
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	
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<u>대상이</u>	대상이 되
될 것을 알면서 아동·청소년	<u>는 아동·청소년</u>
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	
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・청	
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	

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
② (생략)

- 제15조(알선영업행위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 - 1. 2. (생략)
 - 3.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
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
 ·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
 자
 - 4. (생략)
 - ② · ③ (생 략)

② (현행과 같음) 제15조(알선영업행위 등) ①
·.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3
<u>사용되는 자금 • 토지</u>
4. (현행과 같음)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